

2010년 4월



BORDEN
LADNER
GERVAIS

IN THIS ISSUE

p.1

통신산업

(Telecommunication)

p.2

우라늄 광업

(Uranium mining)

BLG의 Korea Team 대표로서, 지난 3월 3일에 있었던 캐나다 연방정부의 연례주요정책발표(일명 “Throne Speech”)에 관한 간략한 리포트를 한국 내 BLG의 고객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제공하여 드리게 된 점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 발표를 통해 캐나다 정부는, (1) 위성 및 통신 산업을 포함한 주요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문호를 더욱 개방할 것이며, (2) 불필요한 규제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캐나다 우라늄 광업의 발전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통신 산업(Telecommunication)

현재 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소유제한 원칙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1) 사업자의 이사회 구성원 중 최소 80%는 캐나다인이어야 함
- (2) 외국인은 직·간접적으로 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를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보유할 수 없음
- (3) 외국인은 직·간접적으로 사업자를 자회사로 둔 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33⅓%를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보유할 수 없음
- (4) 사업자 및 그 지주회사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외국인에 의하여 통제되어서는 아니됨 (소위 “사실상의 통제” 요건)

위에 요약된 요건들은 의결권 있는 주식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종종 의결권 없는 주식의 보유를 통해 통신사업자에 대한 지분 비율을 최대화하고자 합니다. 적어도 통신사업자에 관하여는 20%, 그 지주회사에 관하여는 33⅓%라는 의결권 있는 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 상한이 충족되는 한,

외국인소유제한 원칙의 준수 여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사실상의 지배”라는 요건에 의해 좌우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 12월에 캐나다 산업부 장관은 Globalive라는 휴대전화서비스 분야의 신규사업자가 외국인소유제한 원칙의 요건들을 충족하였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음으로써 해당 업체에 관한 상반된 취지의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의 결정을 뒤집은 바 있습니다. 산업부 장관은 Orascom Telecom이라는 이집트 회사가 전체 주식의 65%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인이의결권 있는 주식의 80% 이상을 보유함으로써 외국인소유제한 원칙 중 수치상의 요건을 충족한 Globalive의 경우 그 지분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적어도 휴대전화서비스 분야에 관하여는 관련 규정의 완화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연방정부의 의뢰를 받은 경쟁정책검토자문단(Competition Policy Review Panel)은 2008년 최종 보고서를 통해 통신망 기반 사업자에 관한 외국인 지분 제한의 축소 혹은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산업부장관은 Throne Speech 후 가진 텔레비전 인터뷰를 통해 통신분야의 외국인 소유 제한을 철폐하고자 하는 정부측 의지를 재차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그 시기 및 구체적 절차에 관한 질문에, 산업부장관은 현재 정부가 필요한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는 중이라면서 계속 추이를 지켜봐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우라늄 광업 (Uranium mining)

캐나다는 2009년 전세계 생산량의 22%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국입니다.

캐나다 연방정부의 '우라늄 관련 산업의 외국인 소유에 관한 방침(Non-Resident Ownership Policy on the Uranium Sector)'에 따르면, 캐나다 내 우라늄 채굴 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비율은 사실상 49%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i) 해당 사업이 캐나다 투자법(Investment Canada Act)에서 정한 바에 따른 '캐나다인에 의한 지배'를 받고 있거나 (ii) 캐나다인인 합작투자자를 모색할 수 없었음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캐나다 투자법 제26조 1항에 따르면, 어느 기업이 '캐나다인에 의한 지배'를 받는 것으로 인정되려면 (1) 1인의 캐나다인 혹은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한 자들로 구성된 단체(이하 "표결집단")에 속한 2인 이상의 캐나다인이 해당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거나 (2) 1인의 외국인 혹은 외국인(들)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이 결정되는 표결집단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을 통하여 해당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같은 법 제26조 6항에 따르면, 2인이 어느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전부를 동일한 비율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중 1인이라도 외국인이라면 해당 기업은 캐나다인에 의한 지배를 받는 기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신 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캐나다 정부의 우라늄 광업 분야 자유화 움직임은 2008년 경쟁정책검토자문단의 우라늄 광업 외국인

보유 자유화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다만, 해당 자유화 권고는, 캐나다인에 의한 해외 우라늄 자원 개발 또는 가공 기술에의 참여 기회 보장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한국내 우라늄 광권의 외국인 보유에 제한이 없으므로, 캐나다 정부 역시 한국 투자자에 대하여 캐나다 우라늄 채굴 관련 지분 제한을 폐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한국의 코스닥 시장에 해당하는 캐나다 TSX-Venture에 상장된 캐나다 법인 Oriental Minerals Inc.가 한국내 우라늄 광권 취득 사실을 공지한 바 있습니다.

우라늄 채굴 관련 자유화 조치와 더불어 캐나다 정부는 광범위한 자원 개발 분야의 사업 인허가 절차를 까다롭게 만드는 복잡한 규제를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보다 단순하고 투명한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 분야의 예측가능성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 리포트는 관련 주제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를 위해 제공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는 별도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신철희 (Jay Shin) Korea Team 대표

Tel: (604) 640-4168

jshin@blgcanada.com

APG Regional Leaders

Calgary Office

Douglas V. Tingey
Tel: (403) 232-9483
E-mail: dtingey@blgcanada.com

Montréal Office

Virginie Chan
Tel: (514) 954-3160
E-mail: vchan@blgcanada.com

Ottawa Office

John Paxton
Tel: (613) 787-3546
E-mail: jpaxton@blgcanada.com

Toronto Office

Rebecca C.W. Chan
Tel: (416) 367-6723
E-mail: rchan@blgcanada.com

Vancouver Office

Lily Wang
Tel: (604) 640-4033
E-mail: lwang@blgcanada.com

Waterloo Office

Jeffrey Wong
Tel: (519) 579-5600 ext 224
E-mail: jwong@blgcanada.com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without prior written permission of Borden Ladner Gervais LLP. This newsletter has been sent to you courtesy of Borden Ladner Gervais LLP. We respect your privacy, and wish to point out that our privacy policy relative to newsletters may be found at <http://www.blgcanada.com/home/website-electronic-privacy>. If you have received this newsletter in error, or if you do not wish to receive further newsletters, you may ask to have your contact information removed from our mailing lists by phoning 1-877-BLG-LAW1 or by emailing [subscriptions@blgcanada.com](mailto:emailingsubscriptions@blgcanada.com).

©2010 Borden Ladner Gervais LLP

Borden Ladner Gervais LLP Lawyers • Patent & Trade-mark Agents

Calgary

1000 Canterra Tower
400 Third Avenue S.W.
Calgary, Alberta, Canada T2P 4H2
tel: 403 232-9500 fax: 403 266-1395

Montréal

1000 de La Gauchetière Street West
Suite 900, Montréal, Québec, Canada H3B 5H4
tel: 514 879-1212 fax: 514 954-1905

Ottawa

World Exchange Plaza
100 Queen St., Suite 1100
Ottawa, Ontario, Canada K1P 1J9
tel: 613 237-5160 1-800-661-4237
legal fax: 613 230-8842 IP fax: 613 787-3558

Toronto

Scotia Plaza,
40 King Street West
Toronto, Ontario, Canada M5H 3Y4
tel: 416 367-6000 fax: 416 367-6749

Vancouver

1200 Waterfront Centre
200 Burrard Street,
P.O. Box 48600
Vancouver, British Columbia, Canada V7X 1T2
tel: 604 687-5744 fax: 604 687-1415

Waterloo Region

Waterloo City Centre
100 Regina Street South, Suite 220
Waterloo, Ontario,
Canada N2J 4P9
tel: 519 579-5600 fax: 519 579-2725
IP fax: 519 741-9149

www.blgcanada.com

Borden Ladner Gervais LLP is an Ontario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